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22. 6. 20. 개정 판 (시행 2022. 3. 1.) → 2022. 9. 5. 개정 판 (시행 2022. 9. 1.)

바뀔 2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276/compare?from=1381&to=1382>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후 10:07:55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재임용 심사기준) 재임용 심사기준은 [별표서식 2]와 같다. 재임용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물 배점 기준은 교원업적평가규정의 교원업적평가기준을 준용하며, 심사기준은 최초 임용 시 본인의 전공분야 및 채용분야를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06-08〉	제7조(재임용 심사기준) ① 재임용 심사기준은 [별표서식 2]와 같다. 재임용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물 배점 기준은 교원업적평가규정의 교원업적평가기준을 준용하며, 심사기준은 최초 임용 시 본인의 전공분야 및 채용분야를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06-08〉 ② 부교수의 재임용 심사기준은 조교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신설 2022-09-05〉
제7조의2(승진) 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승진은 부교수까지 승진할 수 있다. ② 승진 소요기간은 신규임용 시 경력과 관계없이 6년으로 하며,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20-06-08〉〈개정 2022-06-20〉 1. 교원 복무 규정 준수 2.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3. 승진평가기준 충족 [별표서식 3] ③ 승진심사의 절차는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06-20〉	제7조의2(승진) 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승진은 부교수까지 승진할 수 있다. ② 승진 소요기간은 신규임용 시 경력과 관계없이 6년으로 한다. 하며,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20-06-08〉〈개정 2022-06-20〉 1. 교원 복무 규정 준수 2.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3. 승진평가기준 충족 [별표서식 3] ③ 승진심사의 절차는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06-20〉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조문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임용 심사기준) ① 재임용 심사기준은 [별표서식 2]와 같다. 재임용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물 배점 기준은 교원업적평가규정의 교원업적평가기준을 준용하며, 심사기준은 최초 임용 시 본인의 전공분야 및 채용분야를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교수의 재임용 심사기준은 조교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6년으로 하며"를 "6년으로 한다. 하며"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